

2020년도 제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8.(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권현영,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주요내용: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함.

- 회의결과: 백대용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413건(안건번호 제2020-39677호~4082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39677호~3968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9687호~39819호는 밴드에서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밴드에서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회원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어 해당 밴드의 폐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9820호~3983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자동인증, 크

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25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성원영 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96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성원영 전문위원: 오늘 의결안건은 두 개임. 제1호 안건은 분과위원회
회 위원장 선출 건이며, 제2호 안건은 시정권고 심의임.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성원영 전문위원: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
견을 구함.
- A 위원: 백대용 위원을 제1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추천함.
- B 위원, C 위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백대용 위원을 제1분과위원
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함.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대용 위원을 선출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넷플릭스', '소니픽처스', '워너브러더스', '월트디즈니', '한글과 컴퓨터', 'Adobe Systems', '구글'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님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위원, B 위원, C 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안건번호는 제2020-39677호~40824호이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45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413건의 복제물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9677호~39686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민원인 신고 건의 경우 데드카피 안건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를 드리고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39677호~3968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모니터링 채증 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39677호~39681호는 웹하드 사이트 '☆☆☆☆'에서 일본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39682호~39686호는 웹하드 사이트 '★★★★★'에서 일본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 B 위원: 해당 저작물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료로 판매 중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 B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 없이 가결했던 사안과 같음. 가결함이 타당함.
- C 위원: 가결 의견임.
- A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9677호~3968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

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9687호~3981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밴드에서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회원 수 100명 이하 소규모 밴드에 대해 시정 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2020. 6. 3. 전체심의위원회는 개방형 밴드에서 최신 개봉한 영화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회원 수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바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게시물 정보, 침해증거자료 등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39687호~3981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안전번호 제2020-39687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9687호는 밴드 '○○○'에서 영화 '프리즌 이스케이프'를 제공한 사안임. 밴드 회원 수는 2명임. 보호원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밴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폐쇄적인 성격의 밴드가 아닌 개방형 밴드이기 때문임. 밴드 검색창에 영화 제목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게시물이 검

색되어 누구나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는 개방형 밴드를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A 위원: 보호원의 밴드 모니터링으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아님. 밴드는 사적 영역인데, 이를 모니터링 한다면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일각에서는 대다수의 밴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물 열 개 중 하나 꼴로 불법복제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나머지 아홉 개 게시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이나 동창간의 사적인 대화와 표현이 위축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하지만 조금 전 확인하신 바와 같이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에는 기본권으로 보호할 만한 표현을 찾기 어렵고, 영화 불법복제물이 모니터링된 밴드는 십중팔구 다수의 최신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법리적 관점으로는 밴드 게시물에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봄. 일부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사적인 영역까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는 소규모 밴드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집중 논의

한 바 있고, 최근 전체심의위원회는 회원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밴드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하였음.

- A 위원: 개방형 밴드의 경우 회원 수가 1명일지라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저작물을 소장용으로 복사하는 등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문제되지 않지만,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 할 것임. 이용자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기술의 속성과 상황을 이해해야 함. 심의위원회는 허술하게 대응해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되고,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함. 이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B 위원: 전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C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9687호~3981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39820호~3983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13개 안전, 14개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의 해당 안전 표에 정리되어 있는 불법복제물, 게시자, 게시물수, 버전, 저작권사, 무료 체험용 제공 여부, 크랙 포함 혹은 자동인증 등에 관한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신고 내용, 게시물 정보, 침해증거자료 등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39820호~39832호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금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크래킹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거나 자동인증이 되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음.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복제·전송자의 심의대상 게시물 제공 행위가 불법복제물 전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크랙포함, 자동인증의 방법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전송에는 해당할 수 있음.
- B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가 계속해서 가결했던 안전과 같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웹하드에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복제물 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하는 크래킹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키를 주된 문제로 보고 있음.

- A 위원: 저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이용허락이 이루어지는 계약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라이선스 키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고, 이때 키를 제공받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것임. 크래킹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기존 의견은 이용자의 행위를 좋게 해석하겠다는 취지로 보임.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트라이얼 버전을 누구나 이용, 복제, 배포할 수 있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되며, 저작권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그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음. 각 소프트웨어에는 수많은 버전이 있어 이용허락 조건을 모두 확인하는 것에 현실적 제한이 있고, 이는 보호원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임.
-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사의 법무팀이나 라이선스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시정권고 제도나 이를 담당하는 기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몇몇 분들은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물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A 위원: 한국지사의 직원과 통화한 내용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 A 위원: 이러한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본사에서 직접 대응하고, 한국지사는 본사가 지시한 내용을 대행할 가능성이 높음. 본사는 우리나라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과 이득을 확보하겠다는 글

로별 전략을 취하고 있음. 다만 한국 사이트에 트라이얼 버전이 올라온 것은 한국지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그렇지 않고 '저작권자의 본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이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크래킹 프로그램 등 일종의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음.

해당 저작물은 저작물과 함께 저작물을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이용허락 계약은 정상적인 수단을 제공받은 자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인데, 계약이 완성되기 전의 문제는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이용허락권자의 추인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의사를 확인해야 함.

기존 심의위원회는 크래킹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온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저작권자가 추인의 의사표시로서 소프트웨어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본질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

- B 위원: 피해자인 저작권사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컴퓨터공학교수님이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오신 심의위원은 어찌됐든 크래킹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키 등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고, 법조계 심의위원 역시 법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왔음.

- A 위원: 기술적 해석이 아닌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야 마땅함. 기술적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이나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하지만 시정권고 제도는 과학, 기술적으로 완전한 동일성이 아닌 '법률적'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그러한 증거가 따로 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 함.
- 성원영 전문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가 침익적 성격이 있는 조치임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심스러울 때는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음.
- A 위원: 그러한 해석은 이용자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사표시임. 즉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저작권사의 고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의사를 물으니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논의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long arm statute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배제해야 함.
- B 위원: 예컨대 '한글과컴퓨터'사는 트라이얼 버전을 배포할 때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을 것이고, 이용자는 동의를 의사를 밝힌 후에야 트라이얼 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 일련번호 등을 제공받았을 것임. 즉 저작재산권자는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에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했을 것

임. 그러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크래킹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에 해당함.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심의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에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보호원이 시정권고를 함에 있어 피해자인 저작권사의 의사를 무조건 존중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김. 저작권사가 시정권고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정권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음. 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저작권사의 의사를 참고사항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공공성이나 공익적 측면에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해야 함. 해당 안건 역시 저작권사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 A 위원: 근거로 삼는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9820호~3983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9833호~40824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한 데드카피 안건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안들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데드카피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합법 콘텐츠를 단순 복제한 것을 의미함. 100%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안전들도 존재함. 예를 들면 만화 불법 복제물은 말풍선 부분을 번역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 등 해외에 서버가 있는 불법사이트에서 자체 번역하여 제공하는 버전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전 역시 특별한 쟁점 없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 C 위원: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논란의 여지 없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들임. 안전 번호 제2020-39833호~40824호 모두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명백성'이 핵심으로 보임.

- 정현순 사무처장: 그러함. 저작권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아주 높은 안전임.

- A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9833호~40824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9677호~4082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15.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권헌영

위원 박정인